

1920~1930년대 ‘풍속괴란’ 소설 검열의 허상  
—치안 통제로서의 풍속 통제

조자영

---

---

목차

1. 서론
  2. 검열 명분으로서의 ‘풍속괴란’: 체제 비판과 결집 가능성
  3. ‘풍속괴란’ 소설 수용의 세 양상
    - 3.1. 파멸적 징치 대상으로서의 살인과 매춘
    - 3.2. 교훈담으로 미화된 매춘
    - 3.3. 자기비판 대상으로서의 매춘
  4. 결론: 소설에서의 치안/풍속 검열 분리의 허구성
- 
- 

1. 서론

일제강점기 검열 연구는 실증적 자료에 기반해야 하는 만큼 제도사를 면밀히 검토하는 초기 연구자들의 방향성을 따르며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검열 연구가 부딪혀 온 한계 역시 자료의 공백이나 왜곡된 정보에 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검열 연구는 과거 유산의 잔재적 차원을 넘어, 시대를 가로지르는 통치 정당화의 논리로의 확장이라는 주요한 의의를 지녀왔다.<sup>1)</sup> 검열 연구는 검열 당국에 대한 방어적 논리로서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자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검열과 통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며 발전해왔다.

일제의 검열 논리가 ‘권장하는 근대성’과 ‘불허하는 근대성’을 함의한다고 할 때, ‘치안방해(治安妨害)’와 ‘풍속괴란(風俗壞亂)’이라는 일제 검열의 양 축 모두 허용 범주에 대한 경계 지점을 지니게 된다. 많은 논자들이 지적한 바 있듯, 기존의 검열 연구는 ‘치안방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여왔다.<sup>2)</sup> 이는 첫째로 ‘치안방해’에 비해 ‘풍속괴란’의 사유로 검열된 대상이 절대적으로 적은 수를 보였기 때문이며, 둘째로 ‘치안’의 범위가 상세하고 명백한 데 비해 ‘풍속’의 범위는 모호하고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범위를 조정됐는지언정 허

---

1) 한기형은 식민지가 “그 공과를 둘러싼 이념 논쟁으로 휘발”되는 것을 경계하며, 검열을 포함한 식민지 경험이 현재의 문제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즉 한기형이 주목하는 ‘식민지의 물질성’이란 오늘날까지 재현되어 온 권력 행위로 파악하고 감각적 경험의 층위에서 다루어야 하는 대상이다. (한기형 편, 『미친 자의 칼 아래서—식민지 검열 관련 신문기사 자료 1』, 소명출판, 2017, 3쪽.)

2) 권명아는 학계에서 검열 연구가 본격화되던 초창기인 2007년에 이미 이를 지적한 바 있다. 검열 연구가 ‘치안방해’에 집중되고 풍속 검열에 있어서는 미진했던 이유는 사상 통제에 비해 비엘리트층의 문화, 관습, 기호, 취미에 관련된 풍속 통제 연구와 자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권명아가 제안한 풍속 검열 연구의 향후 과제는 풍속 통제를 통한 주체의 구성에 초점을 두고 “불량 집단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비국민의 자질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의 규명에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문헌별의 대담을 통해 비교적 최근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검열 연구에 있어 풍속 통제의 실체에 대한 규명 작업이 자료 확보의 한계를 넘어서는 관점과 시도를 통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권명아, 「풍속 통제와 일상에 대한 국가 관리—풍속 통제와 검열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제33호, 2007, 369~371쪽; 강진호(사회), 강영미·김영애·김준현·문한별·유임하·장영미·홍창수(대담), 『개작과 검열의 사회·문화사』, 『개작과 검열의 사회·문화사』, 박문사, 2022, 50~52쪽.)

용의 경계는 ‘치안’과 ‘풍속’에 모두 존재했다. 이들의 경계는 범위와 세부를 달리하며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통치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풍속괴란’의 경계는 광복 이후에도 사적영역의 규범화를 통한 ‘미풍양속’의 내면화는 통치 집단의 입맛에 맞게 조정되어 왔다. 풍속 검열에 관련한 기록은 사상 검열의 약 10%에 불과하다는 맹점을 지니긴 했으나, 문헌별이 지적했듯, 조선에서의 풍속 검열이 외설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적이다.<sup>3)</sup> 이는 풍속 검열 연구에 있어 불온(不穩)/건전(健全)의 이중적 방향성을 밝히는 작업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권명아는 일찍이 일본의 사례를 통해 풍속 통제의 기본 이념을 ‘지방성’의 인정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사회 정화, 행복한 가정의 이념으로 보고 이를 조선에서의 풍속 검열 사례와 비교한 바 있다.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두 가지 기준을 풍속 통제의 주요한 이념으로 두고, ‘이를 선량함’과 ‘그렇지 않음’의 선을 생산해나가는 행위로 본다. 권명아에 따르면 풍속 검열 연구가 부딪히는 어려움은 풍속 검열의 유동성·자의성·우연성·불확정성에 있다.<sup>4)</sup>

본고는 앞서 논의한 풍속 검열의 모호성과 자료적 한계를 전제로 삼되, 실제 단속 대상이 된 서사들의 공통 구조와 허용의 기준을 텍스트 내부에서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풍속 검열을 치안 통제와 분리된 제도가 아니라, 동일한 통치 논리 안에서 연동되며 작동한 핵심 장치로 재위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풍속 괴란’으로 분류된 소설들이 외설성 자체보다는 결집의 가능성 혹은 체제 비판의 잠재성과 맞는 국면에서 문제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 텍스트 분석을 통해 추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관점은 풍속 검열을 둘러싼 자료 지형과 제도 운영의 구체적 실태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박수정은 최근의 검열 연구가 일본측 기록물로 연구가 확대되는 상황을 제시하며 조선과 일본의 검열 기록의 세부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성과학(性科學) 서적을 중심으로 한 일본어 ‘풍속괴란’ 도서에 비해 조선어 ‘풍속괴란’ 도서는 그 수가 압도적으로 적었음을 밝힌 바 있다.<sup>5)</sup> 특히 일본에서는 허가된 도서가 조선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내지와 식민지 간의 신지식에 대한 지적격차를 만들었다. 한기형 역시 박헌호의 논의를 참고하여<sup>6)</sup> 이입출판물 단속이 ‘내지인’의 특권이 식민지인에게 공유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해석에 동의한 바 있다.<sup>7)</sup> 이를 통해 한기형은 사회주의와 성문화에 정보와 지식이 제국 내부의 서로 다른 법역<sup>8)</sup>으로 인해 차단되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3) 같은 글, 50쪽.

4) 권명아, 앞의 글.

5) 박수정, 『『조선총독부 금지단행본목록』과 일본 내무성 『금지단행본목록』의 비교 고찰—‘풍속괴란(風俗壞亂)’으로 보는 성과학(性科學)의 유입』, 『동북아문화연구』 제72집, 2022, 139~162쪽.

6) 박헌호, 「문화정시기 신문의 위상과 반검열의 내적 논리」, 검열연구회 편,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소명출판, 2011, 199~273쪽.

7) 한기형, 「이중출판시장과 식민지 검열: 토착성이란 문제의식의 제기」, 『민족문학사연구』 제57호, 2015, 136쪽.

8) ‘법역’과 ‘문역’은 검열 연구에 있어 한기형이 차용해 제안한 개념으로, ‘검열의 운동성 때문에 ‘법역’의 내적 체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했으므로 ‘문역’ 역시 완결되지 않는 유동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보았다. ‘법역’은 “검열수단이 특정지역과 그 인구집단에 미치는 효력 범위”를 뜻한다. 조선과 일본은 검열의 ‘법역’의 차이로 인해 지식문화의 지역 간 비대칭성이 구축됐다. ‘문역’은 “각 ‘법역’에서 허용되는 서술 가능성의 한계”를 의미한다. 즉 합법적으로 간행된 텍스트의 총체에 대응된다. (한기형, 「법역(法域)과 문역(文域): 제국 내부의 표현력 차이와 출판시장」, 『검열의 제국』, 푸른역사, 2016, 35쪽.)

이러한 기록과 단속의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은 검열 인력의 구성과 배치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정근식에 따르면 1920년대 초반 고등경찰 내의 통역관 비중은 약 1/3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3·1 운동 이후 조선인에 대한 업무가 증가했으므로 경찰제도 개정에 의해 조선어장려정책이 시행됐다.<sup>9)</sup> 1927년판 출판경찰 연보인 「신문지 출판물 요항」에 따르면 조선어 신문잡지는 일본인 통역검열관이 맡고, 충원된 조선인 검열관이 한글 단행본 등의 검열종사를 맡았다. 이러한 분담은 1926년 도서과 출범 이후에도 유지됐다. 이민주는 이를 “미묘한 표현상의 차이”를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일본인 통역검열관들이 조선어 신문잡지의 단속을 맡은 사실에 대해 조선어에 매우 능숙했거나 표현의 문제보다는 “‘일본인의 시각’에서 문제가 되는 것”<sup>10)</sup>을 더 중요한 검열 사유로 보았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한다.

본고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 역시 일제의 검열이 표현에 기반하긴 하지만, 문학적 해석의 여지를 고려하지 않고 통치 집단의 필요에 의해 과잉해석되거나 과소해석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 있다. 기존 연구에서 검열자의 자의성에 의해 신문과 출판물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구체화하여 검열된 작품들이 가리키는 공통적 방향성을 검토하는 데 본고의 첫 번째 목적이 있다. 두 번째 목적은 검열되지 않을 수 있었던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불온’<sup>11)</sup>의 경계를 확인하는 데 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치안질서 유지와 풍속괴란 통제라는 일제 검열 당국의 두 축 중 풍속괴란의 여지를 지닌 문학 작품들이다. 치안질서 유지의 명목으로 통제된 작품들은 사회주의 사상 또는 민족주의 사상의 선동 가능성을 지닌 글로서, 일제의 통치 체제에 대한 부정과 그러한 잠재성을 지닌 경우 ‘불온’의 대상이 되었다.

‘불온’의 통제로써 통치 당국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하는 목적은 체제 유지에 대한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함으로써 통치 집단의 권위를 제고하기 위함일 것이다. 같은 논리로 허용의 목적은 위협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포착하고 체제를 선전하여 제국의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통치 집단을 향한 거부나 모독이 위협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주체가 민중 집단의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3·1 운동은 이러한 위협의 체험을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불온’에 대한 낙인은 민중을 동원할 수 있는 선동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필수적이었을 것이며, 집단적 행동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닌 그 싹이 될 수도 있는 집단적 사상이나 감정 역시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불온’에 대비되어 허용된 범주를 ‘건전’이라고 한다면, ‘건전’이 허용하는 집단성은 오직 일제의 통치에 대한 수용과 긍정에 기반한 행위, 사상, 감정이었을 것이다. 그밖의 집단성은 잠재적 불온함으로 간주되어 통제의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검열의 목적성은 문학 작품에도 반영되어갔다.

본고에서 다룰 연구 대상의 범위는 1920~1930년대 소설로 한정한다. 1926년 도서과 출범으로 검열의 체계화가 진행되며 법령에 의한 풍속 단속이 시행됐고, 『1936년도 출판경찰개관』에서 ‘검열표준’이 제시되며 이후 풍속 단속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됐기 때문이다.<sup>12)</sup>

9) 정근식, 「일제하 검열기구와 검열관의 변동」, 『대동문화연구』 제51호, 2005, 12~17쪽.

10) 이민주, 『제국과 검열』, 소명출판, 2020, 64쪽.

11) 임유경은 ‘불온’이 사상 검열의 표지일 뿐만 아니라 근대 일본 제국의 통치 언어였음을 제안한 바 있다. 임유경의 논의에 따르면, ‘불온’은 원래 정치적 위협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라 ‘불안정함’이라는 감각적 상태를 지시하는 말로, 근대 행정과 경찰 문서에서는 ‘정세의 동요’나 ‘민심의 불안’을 탐지하기 위한 감정 관리의 언어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용법은 사상의 단속을 넘어 사회 구성원의 감정적 움직임과 언어적 표현을 예민하게 감시하려는 통치 기술의 일환이었다. 즉, 식민지 검열 체제에서 ‘불온’은 억압의 언어이기 이전에 안정과 동요를 구분하는 규범적 언어로 작동하였다. (임유경, 「개념으로서의 ‘불온’」, 『개념과 소통』 제15호, 2015, 189~229쪽.)

12) 문한별은 『조선출판경찰일보』를 통해 일제강점기 단행본 소설 목록을 검토하며 풍속 저해를 이유로 단행본 출간이 불허된 소설은 거의 없었던 이유를 작가와 출판업자들의 자기 검열에서 찾는다.

도서과 출범 이전의 시기에 풍속괴란 검열에 대한 법령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경찰실무요서』에 따르면, 한일 합방 직후에는 공판에 부치지 않은 형사사건, 범죄의 교사 또는 변호, 의회의 비밀회의 기사, 군대의 진퇴와 외교적 사항 등 안보와 치안 질서 유지 등의 기재를 금지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1909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법」 제11조에 따라 안녕질서를 방해하며 풍속을 괴란하는 문서도화에 대한 출판물 검열 항목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출판법을 본떠 만든 법률로서 조선의 특수성을 반영하진 않았다.

출판물 검열 항목은 1925년에 예거주의(例舉主義) 형식에 따라 조선의 실제 검열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된 ‘조선문 신문지 잡지에 게재된 불온기사의 사례’를 통해 조선에서의 실제 검열 사례로 추출된 특수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검열 기준은 1927년에 『1926년분 신문지요람』으로 발간됐다. 이는 1926년에 출범된 도서과가 발행한 최초의 출판경찰 연보였다.<sup>13)</sup> 불온기사의 사례에는 검열 기준 항목으로서 독립사상, 배일사상, 사회주의 선전, 치안문란, 풍속괴란의 우려가 있는 기사들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치안문란 항목의 경우, 극도의 비관, 풍설 유포, 의무 부정, 형평운동, 관리 매도, 소작쟁의 선동의 우려가 있는 기사로 세분화되어 총 27개의 사례가 누적되어 있다.

사상 통제나 풍속괴란 검열의 사례가 3~19개로 제시된 데 비해 더 많은 경우를 포괄하는 치안문란 항목은 그 포괄성으로 인해 검열관의 자의성이 발휘될 여지를 제공했다. 또한, 1926년에 작성된 검열 기준에서는 풍속을 괴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항(項)에는 세부 목(目) 없이 사례만을 제시하고 있었으므로 치안문란과 풍속괴란의 경우 사상 통제 항목에 비해 임의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열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규칙의 임의성은 기사나 논설 등에 비해 더 많은 ‘포괄적 해석’의 여지를 지닌 문학 작품 검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설에 대한 사상 통제와 풍속 통제의 단일한 목적성은 통치의 편이라는 일반적 관념을 뛰어넘어, 구체적 지시사항으로서 결집의 통제를 일관된 목적으로 삼는다는 주장을 실제 검열 사례를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검토하는 ‘풍속괴란 소설’은 ① ‘풍속’을 이유로 단속된 소설, ② 매춘이나 살인 등 풍속괴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모티프를 지니면서도 검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설을 함께 염두에 둔다. 두 범주의 텍스트를 비교함으로써 ‘풍속괴란’이라는 행정 항목이 어떠한 통치 논리와 연결되어 작동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1936년에 이르러서야 검열 표준이 법령으로 정립되며 세부적 체계가 세워졌으므로, 그 이전 시기에는 검열로 인해 통제된 작품들의 사례를 통해 검열 기준을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가와 출판업자들은 당국의 검열로 인한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기 검열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작품을 출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문한별, 『조선출판경찰월보』를 통해서 고찰한 일제강점기 단행본 소설 출판 검열의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8집, 2013, 187~206쪽.)

13) 이는 1936년 이후 기존의 사례 제시 방식에서 벗어나 개념적 체계화를 이루며 사유재산제도 부인, 계급투쟁 선동 등의 항목으로 요약되는 검열표준 개정으로 이어졌다. 검열표준의 개정은 군국주의화의 경향을 반영하여 사회주의를 통한 ‘결사’의 금지를 주요한 줄기로 삼았다. 박도화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1920년대 중반부터 독립운동과 사회주의가 결합하게 되며 ‘치안유지법’이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자 모두를 처벌대상으로 묶게 된 결과로 분석한다. (박도화,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법을 통한 권력 행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3~4쪽.)

## 2. 검열 명분으로서의 ‘풍속괴란’: 체제 비판과 결집 가능성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사상 통제는 매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결사(結社)의 금지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일관된 목적성은 출간 검열을 피하기 위한 일정한 우회 전략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풍속 통제의 경우는 다르게 작동했다. 매체의 특성에 따라 검열의 목적성과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풍속 검열은 주로 영화, 음반, 광고, 그림 등 문식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비문자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풍속괴란 단속의 실체는 일본보다 조선에서 더욱 억압적이었다.<sup>14)</sup> 이는 법령이 제국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표면적 규범과 달리,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조선의 특수한 치안 환경이 반영되었음을 시사한다. 조선에서의 풍속 통제는 비문자 매체에 대한 일반적 단속을 넘어, 문식자층이 활용하는 언론과 출판물에서도 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풍속 규제가 식민지적 통제 장치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김유정의 「소낙비」<sup>15)</sup>는 1935년 1월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1석으로 당선된 작품이다. 그러나 『조선출판경찰월보』 78호를 통해 차압행정처분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근거는 미기재이지만, 김정화와 문한별은 불허가 출판물 기사 요지에 기록된 2쪽 분량의 삭제된 결말의 원문을 번역하여 분석하며 “기사요지에 수록된 내용 대부분이 매춘 행위와 관련한 성적인 대화와 묘사가 중심이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근거를 ‘풍속’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6)</sup> 그러나 이들의 분석은 ‘풍속’이라는 처분 근거가 ‘치안방해’라는 맥락 하에 덧씌워진 명분일 뿐임을 지적한다. 처분에 의해 삭제된 원문은 아래와 같다.

소설 석립(夕立) (7)

“이리로 와.”

“신발을 안에 넣고 문 닫아. 누가 혹시 올지도 모르니까.”

“웬일이야. 애 오늘은 분을 바르고 왔구나. 여자는 그래야지.”

“아니 애는 속옷을 입지 않았잖아. 뭔가 입고 있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아?”

그는 계집의 손을 당겼다.

느티나무의 그늘에서 자고 있어도 땀이 코끝을 흐르는 중복(中伏)의 더위였다.

한증막을 #하는 그들은 보리 깔개 위에서 한바탕 하고 났을 때는 온몸이 삶은 호박처럼 됐다.

“리주사님.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sup>17)</sup>

가난한 농민인 춘호는 아내와 서울로 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에서 부자로 소문난 이 주사와 아내의 동침을 허락한다. 산골에는 소작을 부칠 농토도 없고, 품삯을 벌고자 해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피폐하여 가는 농민 사이를 감도는 엉뚱한 투기심”만 부추겼는데, 춘호 역시 노름으로 빚을 갚고 서울로 올라가 일자리를 얻어보려는 심산으로 노

14) 정근식에 따르면 식민지 조선의 검열 기준은 일반표준과 특수표준으로 구분되는데, 전자가 조선의 사회적 사정을 반영한 반면 풍속괴란을 포함한 특수표준은 일본에서 형성되어 조선과 대만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특히 일본의 금지표준은 대만보다 조선에서 더 크게 변용되었다. 이는 검열 권력의 자의성을 축소하고 법치주의적 합리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식민지들을 동질적 법역으로 통합하여 제국적 동원과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이었다. (정근식, 앞의 글, 36쪽.)

15) 김유정, 전신재 편, 「소낙비」, 『일본 김유정 전집』, 강, 2007.

16) 김정화·문한별, 「김유정 소설 <소낙비>의 검열과 복원」, 『국어국문학』 제193집, 2020, 408쪽.

17) 같은 글, 404쪽 재인용(『조선출판경찰월보』 78호).

름판만 기웃거리는 나날을 보낸다. 춘호의 아내를 눈 여겨 보던 이 주사는 춘호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소작을 줄 테니 자신의 첩이 되거나 돈 이 원을 줄 테니 동침을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된다. 인용된 부분은 아내는 남편의 허락 아래 이 주사와 동침을 하는 장면으로,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부분이 검열로 인해 삭제된 탓에, 「소낙비」는 춘호가 아내를 단장해주며 “그 이 원을 고히 받고자 손색 없도록, 실패 없도록 아내를 모양내 보냈다”라는 문장으로 결말 지어지며 그대로 출간됐다. 원래 서사에 내재한 비극적 귀결과 권력의 타락은 숨겨진 채, 가난한 농민의 선택을 개인적 차원의 거래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김정화·문한별은 이를 통해 첫째로 「소낙비」가 매우 자의적인 시각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고, 둘째로 궁핍한 이들이 생존을 위해 매춘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가혹한 식민체제를 고발하고 현실을 비판하는 방향성이 강화됐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비판을 통제하기 위해 ‘풍속괴란’이라는 틀이 ‘치안방해’와 마찬가지로 식민 정책에 반하는 대상을 손쉽게 탄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었음을 제안한다.

그러나 궁핍한 조선인이 생존을 위해 벌이는 매춘담이 「소낙비」 검열의 직접적 동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식민지기 조선인의 빈곤, 매춘, 범죄를 소재로 한 서사는 동시기 소설과 잡지 연재물에서 빈번하게 등장했으며, 상당수는 검열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폐한 조선인의 삶을 강조하는 서사는 ‘후진적 조선’의 상황을 부각하며 이를 교화해야 한다는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 담론과도 일정 부분 호응할 수 있었고, 통치 담론의 수준에서는 ‘개선’과 ‘계도’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효과를 갖기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삭제된 부분에 주목해야 할 지점은 삭제된 부분의 노골적 외설성이나 궁핍한 조선 농촌의 현실이라는 배경이라기보다, “리주사님,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마지막 발화와 ‘주사’라는 인물의 위치에 있다. ‘주사’는 일제가 허용한 선에서 권력을 지닌 지주로 등장하며, 그가 타인의 아내를 취하는 장면은 지주를 향한 불온한 반발심을 노출하는 서사적 효과를 갖는다. 더구나 「소낙비」에는 본문 전반에 걸쳐 보다 노골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적 뉘앙스가 반복적으로 등장함에도, 유독 이 대목만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풍속 검열이 외설의 강도를 기준으로 적용된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아내의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은 과장된 신체 반응을 넘어 비유적 불온성으로 해석될 여지를 지닌다. 생존의 한계와 피폐한 현실을 신체의 언어로 드러내는 발화라는 점에서, 그것은 이미 식민지 조선인의 삶이 소멸의 지점에 다다랐음을 암시한다. 더 나아가 주사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권력의 주체가 쾌락의 주체로 전환되는 순간, 타자의 육체가 희생되는 구조가 드러나며 체제의 폭력성이 은유적으로 노출된다.

따라서 「소낙비」에 대한 검열은 ‘풍속’의 문제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체제 비판적 함의를 제거하기 위한 치안적 조치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삭제된 문장의 초점은 매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식민 권력의 타락을 드러내는 장면과 그로 인해 생겨날 조소와 공분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있었다. 검열의 목적이 도덕적 규율의 강화보다는 감정의 방향을 통제하는 통치 질서의 유지에 있었던 셈이다.

이태준의 「복덕방」<sup>18)</sup> 역시 풍속 검열의 명목이 반드시 외설적 표현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작품 초반에서 안 초시는 황해 연안에 새 항구가 들어선다는 소문을 듣고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 아래 투기에 뛰어들다. 이는 식민지 개발 계획이 공적 정보로 유통되기보다 비밀스럽게 흘러가면서 민간의 사적 투기로 전환되는 구조를 암시한다. 안 초시는 과거 나진 사

18) 이태준, 「복덕방」, 『월간조광』, 1937. 3. 1.

례를 떠올리며 국가 정책이 한순간에 토지 가치를 폭등시킨 전례를 확인하고, 생의 말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조급함 속에서 투자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실제 정보는 관변 인사가 사적으로 활용한 잘못된 유출에 불과했고, 안 초시는 공적 계획이 중단된 뒤 남은 잔여 정보를 믿고 사기 구조에 편입된 셈이 된다. 이때 문제는 공적 개발 정보가 일부 권력자에게 독점된 채 비공식적으로 전용되고, 정보 접근성이 없는 민간이 연출과 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조건에 있었다. 즉 작품이 보여주는 것은 개인의 탐욕이나 도덕적 실패가 아닌, 식민지 개발 담론이 민간 생존 전략을 파탄으로 이끄는 방식이며 이러한 점에서 서사는 구조적 실패를 드러내는 진단에 가깝다.

안 초시의 투기 실패는 개인의 몰락에 그치지 않고 가족 전체의 파탄으로 이어진다. 딸은 신탁회사에 집을 담보로 잡히며 자금을 마련하고, 가족 구성원 누구도 이 선택에 제동을 걸지 못한 채 사실상 파국에 동조한다. 안 초시가 사위 격인 청년의 뒤를 따라나서는 장면은 분노와 모욕을 느끼면서도 자금 운용의 주도권을 그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만 원 하나야 어디로 가랴”라는 식의 자기합리화를 통해 실패를 부정하는 안 초시의 선택은 잘못된 정보에 매달린 채, 체제의 허구적 개발 논리를 믿고 있는 인물의 맹목을 드러낸다.

이렇듯 안 초시의 죽음으로 귀결되는 사건에는 개인적 사행심을 초과하는 지점이 발생한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내린 선택이 일제에 의한 조선의 근대화라는 통치 담론의 허상과 충돌하면서 빚어진 결과로 암시되며, 이는 통치 질서에 대한 냉소나 불만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기게 된다.

「나 서참일세 알겠나? 흥…자네 참 호살세 호사야… 호살세 잘 죽었느니 자네 살았으문 이런호살 해 보겠나? 인전 안경다리 고칠 걱정두 없구…아무튼지…」

하는데 박희완영감이 들어서더니

「이사람 취했네그러」

하며 서참의를 밀어냈다.

박희완영감도 가슴이 답답하였다. 분향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히 툇일것 같아서 잠깐 멈춤했고 서있어보았으나

「으흐윽…」

하고 울음이 먼저 터져 고만 나오고말았다.

서참의와 박희완영감도 묘지까지 나갈 작정이었으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도로 술집으로 내려오고 말았다.<sup>19)</sup>

또한, 안 초시의 자살 이후 이어지는 장례 장면은 사건을 개인적 비극으로 수습하지 않고 정서적 동의로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은 울음, 침묵, 함께 묘지까지 가지 못하고 흩어지는 인물들의 비판적 관점 등을 느리게 묘사함으로써 안 초시의 죽음을 공동체적 정조로 확장시킨다. 애도를 통해 감정이 정리되거나 도덕적 결론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비애가 해소되지 않은 채 공유될 수 있는 감정적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감정이 ‘건전한’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은 채 축적될 수 있는 국면은 집단적 동요로 전환될 여지를 포함하며, 이는 결집을 경계하던 검열 논리와 충돌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복덕방」의 결말은 자살이라는 표면적 사건만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공동체적 감정을 유발한 뒤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남긴다는 점에서 또한 불온한 효과를 지닌 서사로 인식될 가능성을 갖는다. 두 작품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지점은 ‘풍속괴란’이라는 명목이 사

19) 같은 글, 79쪽.

실상 독자 집단의 정서를 통제하기 위한 통치 행위였다는 데 있다. 풍속 검열은 치안 검열과 별개의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는 통제 장치로 함께 기능했다.

### 3. '풍속괴란' 소설 수용의 세 양상

매춘이나 폭력과 같은 규범적 일탈을 주제로 삼으면서도 '풍속괴란'의 명목 아래 검열되지 않고 통과한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사회 구조나 통치 체제가 아닌, 개인의 내면으로 돌린다. 이는 독자의 감정이 현실 비판이나 집단적 불만으로 확장되는 통로를 차단하거나 약화시킨다. 본 장에서 특히 매춘을 다룬 서사에 집중하는 것은 이 소재가 '풍속괴란'이라는 명목 아래 수행된 통제가 도덕 규제에 그치지 않았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매춘은 표면적으로 외설성과 타락의 문제로 포착되었지만, 검열의 실제 초점은 그러한 서사가 통치 방식으로 인한 빈곤이나 민족적 위계에 대한 불합리성을 암시하며 분노와 연대를 조직할 가능성에 놓여 있었다. 이는 풍속 검열이 사상 검열과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보다 은밀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치안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 장치였음을 드러낸다.

#### 3.1. 파멸적 징치 대상으로서의 살인과 매춘

김동인의 「감자」<sup>20)</sup>는 매춘과 살인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음에도 풍속괴란 검열을 피한 대표적 사례로 언급될 수 있다. 작품은 도시 빈민 여성의 생존을 위한 선택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그 결과가 파멸로 귀결되는 구조를 갖는다. 검열 당국이 이 작품을 문제시하지 않았던 이유는 매춘이 미화되지 않고 응당한 처벌로 이어지는 서사적 방향성 때문이다. 일제의 검열은 통치 질서에 대한 위협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우선시했다. 「감자」에서 주인공 복녀는 개인적 선택의 결과로 몰락하므로 집단적 감정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비극의 귀결은 독자의 공감이 집단적 연대로 확장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다. 검열 당국이 허용한 것은 파멸을 통해 질서 유지의 교훈을 강화하는 구조적 방향이었다. 이러한 서사 방식은 일제가 허용 가능한 통치 감각과 일치했다. 작품 속 현실 비판은 개인적 문제로서 맺어지며 체제에 대한 질문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따라서 「감자」는 노출된 소재에도 불구하고 검열을 피할 수 있었다.

(ㄱ) 싸흠, 姦通, 殺人, 도적, 求乞, 징역,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根源地인, 이 七星門 밖 빈민 굴로 오기전까지는, 福女の夫妻는 (士農工商의 第二 위에 드는)農民이었었다. (...) 그는, 열다섯살 나는 해에, 동네스흠아비의게 八十圓에 팔려서 시집이라는것을 갖다. 그의 새서방(병감이라는 것이 덕당할가)이라는 사람은 그보다, 二十年이나 우에로서, 원래, 아버지의 시대에는 상당한 농군으로서, 밭도 몇마직이가 잇섯스나, 그의대로 내려오면서는, 하나 둘 줄기 시작하여서, 마즈막에 福女를 산 八十圓이, 그의 마즈막재산이었었다.<sup>21)</sup>

(ㄴ) 인전, 어딴로 가나? 그들은, 할일업시, 七星門밖빈민굴로 밀리워 나오게 되었다. 칠성문밭글 한 부락으로 삼고, 그곳에 모혀잇는, 모든 사람들의 正業은 거라지오, 부업으로는 도적과, (자기네끼리의)賣淫, 그밭과 이세상의 모든 무섭고 더러운 죄악들이었었다. 복녀도, 그 正業으로 나섯다.<sup>22)</sup>

20) 김동인, 「감자」, 『조선문단』 제4호, 1925. 1.

21) 같은 글, 18쪽.

(c) 그날부터, 복녀도, 「일안하고 공전 만히받는 人夫의 한사람으로 되었다.

복녀의 道德觀, 乃至人生觀은, 故대부터 변하였다.

그는, 아직껏, 淸사네와 관계를 한다는것을, 생각하여본일도 업섯다. 그것은 사람의일이 아니오 짐생의 하는것으로만 알고 잇섯다. 혹은, 그런일을 하면 탁 죽어지는지도 모를일로 아렸다.

그러나, 이런이상한일이 어딴 다시 잇슬가. 사람인 자기도 그런일을, 한것을 보면, 그것은 결코 사람으로 못할일이 아니었섯다. 다시 잇슬가. 게다가, 일안하고도, 돈 더뵈고 긴당된 유쾌가 잇고, 비러먹는것보다 점잔코, ……日本말로 하자면, 三拍子 가즌 조흔 일은, 이것뿐이엇섯다.<sup>23)</sup>

김동인의 「감자」가 매춘과 살인을 다루고도 검열을 회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파멸로 귀결되는 결말 때문뿐만이 아닌, 파멸이 개인적 일탈의 연속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위 인용문에서 복녀의 파멸은 사회 구조에 대한 부정 대신 (ㄱ) 매매혼 풍속, (ㄴ) 게으른 농민, (c) 개인의 부도덕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로 제시된다. (ㄱ)의 매매혼은 식민지 조선의 빈곤과 토지 상실이라는 배경과 연결될 수 있는 소재임에도, 작품은 이를 사회·경제적 변화의 산물임을 드러내는 대신 부모의 선택에서 비롯된 사적 사건으로 축소한다. (ㄴ)의 칠성문 외곽 빈민굴은 도시 하층민이 집적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궁핍의 원인을 탐색하는 장면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 공간은 부도덕과 무능력으로 인해 무질서와 부패가 발생하는 ‘타락의 현장’으로 제시될 뿐이다. 이러한 공간 처리 방식은 빈곤을 조선인의 결함을 배경으로 환원하며 문제의 원인을 개인으로 고정시킨다. 결국 빈민굴은 체제의 모순을 드러내는 장소로서의 성격이 약화되며, 통치 질서가 상징한 ‘장치의 무대’로 기능한다.

(c)에서 드러나는 복녀의 변화가 강요 받지 않은, 스스로의 인식 전환으로 설명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복녀는 처음에는 매춘을 ‘짐승의 일’로 여기지만, 직접 그 경험을 한 뒤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판단에 이른다. 「감자」는 빈곤을 비극의 원인으로 드러내긴 하지만, 이를 개인을 압박하는 사회적 맥락으로 서술하지 않고, 개인이 쾌락과 안일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타락에 이르는 과정으로 그린다. 특히 매춘에 대해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긴당된 유쾌’로 인식하게 되는 복녀의 변화는 생존의 절박함보다 도덕적 붕괴의 측면에 중심을 둔다. 그 결과 구조적 폭력은 희석되고, 개인적 일탈이 강조된다.

‘불온’은 사회적 원인에 대한 인식과 집단적 문제의식이 결합될 때 형성된다. 그러나 복녀의 비극은 독자의 동정을 이끌어낼지언정, 체제를 향한 분노는 드러내지 않는다. 분노의 대상은 어린 딸을 팔아넘긴 무정한 부모나 빈곤 속에서 무능하게 살아가는 남편, 복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뒤 돈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중국인 ‘왕 서방’과 같은 비정한 개인에게로 향하게 한다. 복녀의 죽음은 여러 개인의 타락이 누적되며 발생한 필연적 귀결로 제시된다. 결말에서 드러나는 시체 매매라는 악행 역시, 복녀의 파멸을 통한 교훈의 강화로 변모하며 식민지인의 부도덕함이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통치의 정당성을 은밀히 재확인시키는 구조를 완성한다.

### 3.2. 교훈담으로 미화된 매춘

현진건의 「정조(貞操)와 약가(藥價)」<sup>24)</sup> 역시 매춘을 소재로 삼고 있음에도 ‘풍속괴란’ 검열을 받지 않았던 사례이다. 『신소설』 창간호는 수록된 소설마다 각 작품을 상징하는 삽화를 배

22) 같은 글, 19쪽.

23) 같은 글, 22쪽.

24) 현진건, 「정조와 약가」, 『신소설』, 제1권 제1호, 1929. 12.

치하고 있다. 그중 현진건의 「정조와 약가」와 이성해의 「유산(流産)」에는 표지 삽화로 여성의 상반신이 노출된 누드화가 사용됐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는 외설의 경계에서 검열 통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작품이 모두 허용의 범주에 있었다는 사실은 외설적 장면의 노출이 아니라 그 장면이 어떤 의미 구조 속에 배치되는지가 검열의 기준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그림> 「정조와 약가」(왼쪽), 「유산」(오른쪽)의 표지 삽화

「정조와 약가」에는 아픈 남편을 낫게 하려는 가난한 아내가 등장한다. 아내는 의원을 모셔와 의원과의 동침으로써 약값을 대신하려 한다. 그러나 「정조와 약가」에서 아내의 매춘은 부정당한 일이 아닌 사랑의 형태로 형상화된다. 환자의 아내를 욕망한 의원 쪽에서 오히려 “정조 관련이란 약에쓰랴도엿고 아무한데나 몸을맛기고도 눈썹만한 부끄러운 맘을 물으는것이불쾌하얏다”<sup>25)</sup>라고 서술될 정도로 아내의 태도는 떳떳하다. 아픈 남편은 곤란해하는 의원에게 “마치 손님에게 밥이나 권하는듯이”<sup>26)</sup> 아내와의 동침을 권하기까지 한다.

『그것도 내병타이지 내죄지 임자가 무슨죄요 안요 안요 임자죄는 안요』한다.

최주부는 제눈과 귀를 미들수업섯다. 세상에 괴괴한 일도 잇고는 불일이다. 이왕지사 정조를깨트렸거든 그비밀을랑 제속깊히 감춰돌일이지 그것을 샅사치 남편의게 꼬자바치는년도 년이어나와 뺨번스럽게 그런소리를들어내노코짓거리고 제 정부조차 버젓하게 더리고온 계집을 잘했다고 위로하는 놈도 놈이아냐.<sup>27)</sup>

25) 같은 글, 13쪽.

26) 같은 글, 16쪽.

이들 부부는 남편의 병이 나을 때까지 의원을 놓아주지 않고, 의원은 부부가 공모한 '강제된 매춘'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자에게 닭을 사다 먹이면서까지 치료에 몰두한다. 독자는 이러한 가치의 전도가 평범한 비극이 아닌, 평온한 일상이자 열녀(烈女) 교훈담으로 처리되는 매춘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이처럼 정조와 변절의 가치가 분리되지 않고 뒤엎히는 지점에서 '기괴성'<sup>28)</sup>이 발생된다. 정조와 변절이라는 가치가 서로를 대체하거나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동일한 장면 안에서 동시에 요구되는 현실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때 매춘은 도덕적 타락이나 외설적 행위로 정리되지 않고 서로 다른 가치가 뒤엎히는 행위로 나타난다. 아내는 정조를 희생하면서도 남편의 생명을 살려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며 두 가치의 분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조와 약가」는 어느 한쪽의 의미를 제거하지 않고, 뒤엎힌 양면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지속되는 현실의 모순을 드러낸다.

이러한 매춘의 역전된 관계성은 위반의 사건을 사회적 문제로 확장하지 않고 개인의 일탈로 환원한다. 의원 최 주부는 돈 많은 명의로 설정되며, 가난한 환자를 경멸하는 속물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인물 설정은 뚜렷한 악역을 제시하는 듯 보이지만, 사건의 전개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최 주부는 환자의 아내를 겁탈하지만, 그 이후 태도의 전환이 일어난다. 아내가 변절을 숨기지 않고 남편에게 그대로 알리자, 남편은 오히려 위로하며 평정을 유지한다. 최 주부 또한 손해를 보더라도 “한시바비 이괴상한 자리를 써나라는 뱃장”<sup>29)</sup>으로 환자를 보살피기 시작한다. 비자발적인 치료일지라도 환자를 살리려는 최 주부의 행동은 도덕적 교훈으로 전환되며 결과적으로 악행은 처벌이 아닌 선행으로 변환된다. 이러한 양가적 전환은 문제가 사회적 균열로 확장되지 않고 내부에서 중화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 작품의 서사적 핵심은 비도덕적 행위가 처벌이나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명랑함과 회복의 정조 속에서 마무리된다는 점에 있다. 아내는 겁탈을 겪은 뒤 슬픔이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이전보다 밝은 모습을 보인다. 이는 부족한 약값을 정조로 보상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역전시키는 과정으로 읽힌다. 그 결과 최 주부는 이해타산을 내려놓고 정성을 다하게 되며, 일탈은 오히려 갈등을 풀어내는 장치로 작용한다.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선택과 상황에 국한하는 서사는 현실 인식의 확장을 차단한 채 사건을 도덕적 교훈의 범주로 포섭한다. 또한, 감정의 안정과 가정의 회복이 여성 주체의 희생을 전제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정조와 약가」의 결말은 여성의 몸과 정조 규범을 통해 '건전한' 감정 구조를 설계한다. 남편과 의원 사이에서 아내의 욕망과 불안은 거의 발화되지 않고, 열녀 교훈담으로 재포장된 매춘 서사로써 제국이 요구하는 자기희생적 여성성의 모델을 제시하는 효과를 낳는다.

재마춤 그들은 써오르는 해빨을 담복안고 잇섯다. 의조코 나라니 서잇는 그들의 얼굴엔 광명과 행복이 령롱하게 번적이는듯하얏다.

27) 같은 글, 15쪽.

28) 필립 톰슨은 기괴성(grotesque)의 개념을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의 작품과 반응 속에서의 해결 안 된 충돌”이자 “양면성이 공존하는 비정상”으로 정의한 바 있다. 톰슨에 따르면 기괴성은 과장되게 표현될지라도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공간에서 벌어지며, 그러한 현실성이 기괴성을 강력한 것으로 만든다. 식민지 시기의 매춘 모티프가 지닌 기괴성은 현실에 공존하는 모순적 양면성의 ‘뒤엎힘’을 통해 이들의 불가분성과 해결 불가능성을 드러낸다. 기괴성의 이러한 특징은 기괴성이 풍자 또는 아이러니와 구별되는 결정적 차이점이기도 하다. 기괴성과 달리 풍자는 뒤엎힌 것들을 구분하려 애쓰고, 아이러니는 어떤 관계를 지적으로 ‘풀 수 있는’ 가능성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필립 톰슨, 김영무 역, 『그로테스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37~69쪽.)

29) 현진건, 앞의 글, 16쪽.

『저런것들은 정조도 모르고 질투도 모르는 모양이지!』 최주부는 눈이부신듯이 얼른 고개를 돌리며 혼자 중얼거렸다.<sup>30)</sup>

「정조와 약가」의 마지막 장면은 정조와 변절의 가치가 우열을 가르지 않고 공존하는 상태로 마무리된다. 작품은 윤리적 균열을 해소하지 않지만, 이를 위협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 일탈은 사회적 모순이 아니라 기괴한 성스러움의 형태로 정리된다. 이러한 서사의 방향성은 공동체적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의 확장을 차단한다. 지나치게 외설적인 묘사가 있지 않은 한, 소설의 ‘풍속괴란’에 대한 위협성에 대한 검열 당국의 기준은 행위의 재현이 아니라 감정의 향방에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3.3. 자기비판 대상으로서의 매춘

김유정의 「가을」<sup>31)</sup>은 아내에 대한 소유욕과 ‘아내 팔기’<sup>32)</sup>를 통한 이윤 획득이 동일한 인식 위에서 충돌하는 작품이다. 두 욕망은 상반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아내를 하나의 교환 가능한 물질로 보는 시선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통념과 생존을 위해 아내를 거래해야 한다는 가장의 판단은 어느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으며, 김유정은 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남겨둠으로써 두 가치가 동시에 유지되는 서사적 조건을 마련한다. 현진건의 「정조와 약가」가 정조와 생존 사이에 갈등을 개입시키지 않음으로써 가치의 뒤얽힘을 잠재적으로 내재시켰다면, 「가을」은 갈등을 표면에 드러내되 끝내 처리하지 않는 전략을 통해 상반된 가치의 공존을 적극적으로 구성한다.

이때 서술자인 ‘나’의 위치가 결정적이다. ‘나’는 복만의 아내를 소장수에게 넘기는 계약서 작성에 개입하는 관찰자로, 복만이 아내를 팔아넘기는 일에 대해 “나는 조금치도 책임이 느껴지지 않는다”<sup>33)</sup>라며 결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나두 일즉이 장가나 들어 두었드면 이런 때 팔아먹을걸 하고 부끄러운 후회뿐”<sup>34)</sup>이라는 서술은 ‘나’의 결백이 실은 욕망과 부러움으로 오염된 것임을 드러낸다. 책임 회피와 욕망의 공존은 풍자의 효과를 만들지만, 그 풍자는 대상의 비판을 통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무감각한 시선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서술자는 다섯 살 된 복만의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복만의 ‘아내 팔기’를 말리고자 하는 마음을 잠시 드러내지만, 그들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이상 말 떼기 어려운 일이라며 개입을 포기함으로써 윤리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갈등을 유예한다.

기껏 한해동안 농사를 지었다는것이 털어서 쪼기고보니까 나의 몫으로 겨우 벼 두말가웃이 남았다. 물론 털어서 빛도 다 못가린 복만에게 대면 좀 날는지 모르지만 이걸로 우리식구가 한겨울을 날 생각을 하니 눈앞이 고대로 캄캄하다. 나두 올겨울에는 금점이나 좀 해볼까 그렇지 않으면 투전을 좀 배워서 노

30) 같은 글, 18쪽.

31) 김유정, 「가을」, 『사해공론』 제2권 제1호, 1936. 1.

32) 17세기에 시작되어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영국 민중의 관습 중 하나인 ‘Wife Sale’ 또는 ‘Wife Selling’을 ‘아내 팔기’로 번역하였다. 이진옥은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상품처럼 경매에 내놓아 파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에 ‘매매’가 아닌 ‘팔기’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또한, 이 관습은 보통의 상행위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대부분 부부 합의하에 이루어진 이혼 방식의 하나이며, 그럼에도 역으로 아내가 남편을 경매에 내놓는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상품’을 ‘넘기는’ 행위와 여성의 수동적 입장을 동시에 강조하는 말인 ‘아내 팔기’로 번역한다. (『근대시기 영국의 ‘아내팔기(Wife-Sale)’와 그 역사적 의의』, 『역사와 세계』 46, 2014, 27~57쪽.)

33) 김유정, 앞의 글, 244쪽.

34) 같은 글, 246쪽.

름판으로 쫓아다닐까 그런대도 미천이 들터인데 돈은 없고 복만이같이 내팔을 안해도 없다. 우리 집에는 어떤나라군 병들은 어머니밖에 없으나 나히도 늙었지만 (좀 부끄럽다) 우리아버지가 있으니 내맘대론 못하고 -35)

「가을」은 또한 식민지 농촌의 빈궁이라는 배경을 직접 비판하지 않은 채 암시의 수준에 머문다. 현금 납세 체제로의 전환과 경제 구조 변화가 농민의 생존을 압박하던 사실은 체제나 구조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 확장되지 않으며, ‘아내 팔기’는 사회적 불가피성으로 인한 것이 아닌, 개인적 선택의 일환으로 처리된다. 명목화폐의 도입으로 실물 생산과 생존 방식이 급격히 어긋나던 전환기 농촌에서 ‘가진 것 없는 이들이 무엇을 내다 팔아야 했는가’라는 문제는 구조적 질문이 될 수 있었으나, 작품은 이를 흔하고 대수롭지 않은 교환 행위로 남긴다.

복만이가 오십 원에 아내를 보내던 날 아내가 “마땅히 저 갈 길을 떠나는 듯이 서들며 조금도 섭섭한 빛이 없”고 복만이조차 “잘 가라는 말한마디 없는데는 실로 놀라지 않을수 없다”<sup>36)</sup>라는 ‘나’의 서술은 복만 부부의 속셈에 대한 복선으로 기능한다. 닷새만에 아내가 사라져 ‘나’에게 찾아와 드잡이를 해대는 소장수와와 주재소로 가는 길에서야 ‘나’와 소장수가 복만 내외의 속임수에 넘어갔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우는 소리가 잃어버린 돈이 아까운게 아니라 그런 계집을 다시 만나기가 어려워져 그런가. 번이 흠애비의 몸으로 얼굴 푹푹한 안해를 맞아다가 술장사를 시켜보고자 버르든 중이었다. 그래 이번엔 해보니까 장사도 잘 할뿐더러 안해로서 훌륭한 계집이다. 참이지 몇칠 살아봤지만 남편에게 그렇게 착착 부닐고 정이 붙는 계집은 여지껏 내 보지 못했다. 그러기에 나두 저를 위해서 없건으로 옷을 해입힌다 갈비를 디려다 구어먹인다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겠느냐. 덧돈을 디려가면서라도 찾으랴 하는것은 저를 보고싶어서 그럼이지 내가 결코 복만에게 돈으로 물려달랄의사는 없다.<sup>37)</sup>

소장수는 처음에는 복만의 아내를 경제적 이유로 오십 원에 사들인 인물로 등장하지만, 곧 그 관계의 성격이 달라진다. 그는 처음엔 아내를 술장사에 내세우려는 계획을 밝히지만, 며칠 함께 지낸 뒤에는 “남편에게 그렇게 착착 부닐고 정이 붙는 계집은 여지껏 내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아내를 노동을 위한 교환 대상을 넘어서, 집착적 소유의 대상으로 다시 정의한다. 이후 소장수에게 복만은 돈을 빼앗은 사기꾼의 위치에만 머물지 않고, 여성을 둘러싼 소유 경쟁의 상대자로 새롭게 배치된다. 그 결과 아내는 덧돈을 들여서라도 되찾아야 하는 더 큰 소유 욕망의 대상으로 변모하고, 갈등의 초점 또한 금전 손실의 분노에서 남성 간 경쟁과 욕망의 충돌로 옮겨간다. 서사의 긴장은 결국 여성을 둘러싼 독점적 소유의 경쟁으로 수렴된다.

이 결말은 검열과의 관련에서도 의미심장하다. 소장수는 복만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결코 복만에게 돈으로 물려달랄 의사는 없다”고 말해, 거래의 위법성이나 탐욕의 흔적을 제거한다. 동시에 서술자인 ‘나’는 작품의 말미에 이르러서야 아내 판매 행위의 문제를 의식하기 시작한다. 처음엔 “조금치도 책임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던 그가 점차 혼란과 불편함을 드러내는 변화는 아내를 팔아서 생계를 잇는 상황을 비극적 사건이나 사회적 고발로 발전시키지 않고 풍자 안에서 소멸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서사 처리 방식은 ‘아내 팔기’라는 비윤리적 풍속을 다루면서도 체제 비판과 집단의 형성으로 연결될 여지를 차단한다.

복만 부부가 사라진 후 복만의 행방에 대한 소장수의 추궁에 ‘나’는 복만이 덕녕(아내)의 큰

35) 같은 글, 246쪽.

36) 같은 글, 248쪽.

37) 같은 글, 251쪽.

집으로 갔을 것이라고 답하긴 하지만, 결말에서 ‘나’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복만이는 덕냉이즈 큰집에 있을것 같지않다”<sup>38)</sup>라고 생각하며 갈등의 종결을 유예한다. 피해자와 가해자, 손실과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채 남는 구조는 독자의 분노가 특정 대상으로 향하거나 집단적 정동으로 확장되는 통로를 차단한다. 매춘과 기만이 폭로적 효과를 갖지 않고 허무하게 소멸함으로써 서사는 체제 비판이나 사회적 책임 추궁으로 나아갈 가능성으로부터 보호된다. 「가을」의 회의적 결말은 위험한 소재를 무력화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하며, 문제의식을 소거함으로써 작품이 검열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조건을 제공한다.

#### 4. 결론: 소설에서의 치안/풍속 검열 분리의 허구성

1920년대 후반 검열 기준이 표준화되면서 치안과 풍속은 제도상 별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실제 단속 기록을 보면 두 범주는 운영 단계에서 거의 구분되지 않은 채 작동했다. 검열 체계가 점차 정비되던 당시의 신문 기사에는, 어떤 형태의 결집이든 과하게 통제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경향은 1936년의 검열 기준 개정을 계기로 한층 명확해지며, 통제 대상은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계급투쟁의 선동’ 등으로 개념화되었다. 그 결과 검열의 초점은 점차 ‘결사’의 금지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식민지 통치 권력이 개인의 일탈보다 집단적 연결과 조직화를 훨씬 더 위협적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언론, 집회의 압박이 너무도 심한 당국의 태도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강구하려는 각 단체의 모임은 예정과 같이 재작일 오후 세시부터 시내 수표정 조선교육협회 안에서 서른 한 단체의 대표자 백여 명이 모여 십여 명 경관의 살기 가득한 감시 하에서 개최되었는데 (...) 언론집회압박탄핵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sup>39)</sup>

평양경찰서에서는 평양우편국의 전신과원 전부를 인치하고 취조 중인데 그 내용은 장백구락부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장백(長白)』이라는 잡지를 발행한 까닭이라 한다. 저들이 이른바 비밀결사라는 것이 어떤 정도의 것이며 또 『장백』이라는 잡지의 내용이 얼마나 불온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저 비밀결사라는 것은 극히 모험적의 일이라 더욱 조선 사람의 처지로는 깊이 결심한 바가 있지 아니하면 비밀결사를 조직하지 아니할 것이다. 더구나 우편국 같은 관설기관에서 종업하는 사람이 다른 우편국의 종업원과 연락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기관이 무슨 비밀결사의 성질을 가졌으랴.<sup>40)</sup>

이에 대하여 광화문우편국 소천 주사는 말하되 “우리 우편국원으로 금월부터 그 구락부에 들어 잡지를 사보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구락부라는 것은 별로 특별한 일은 없고 다만 잡지만 사볼 뿐이며 그 잡지는 내용이 온건하여 대개 통신상에 관한 이야기, 문제 등이며 정가는 이십오 전인데 경찰에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태연합니다. 아마 경찰이 일시 오해로 그러는 것이나 아닌가 합니다” 하더라.<sup>41)</sup>

이처럼 단속 사유가 치안·풍속의 구분과 무관하게 ‘결집 가능성’ 자체를 문제화한 사례들은 검열이 항목별 규제라기보다 동일한 통치 논리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박헌호는 검열과 교육은 보상과 처벌을 통해 통치 권력의 가치를 내면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이었음을 지적한다. 박헌호가 지적하듯 ‘안녕질서’와 ‘건전한 풍속’으로의 교화 정책은 전쟁 동원에 적합한 국민을

38) 같은 글, 252쪽.

39) 「언론집회압박탄핵회(言論集會壓迫彈劾會)」, 『동아일보』, 1924. 06. 09. 2면.

40) 「경찰(警察)의 신경(神經) 과민(過敏)」, 『동아일보』, 1924. 06. 13. 2면.

41) 「우편국(郵便局)에 비밀결사(秘密結社)?」, 『동아일보』, 1924. 06. 12. 2면.

양산하기 위한 근대화 기조와 맞물려 있었다. 풍속 검열 역시 도덕적 규제를 넘어 제국의 유지를 위한 치안 통제의 연장선에서 작동했고, 두 항목의 분리는 형식적 구분에 가까웠다.<sup>42)</sup>

모든 형태의 외설이나 풍속이 일률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결정적인 기준은 그것이 집단의 감정적 동요나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에 있었다. 소년·소녀 독자층을 겨냥한 검열이 유난히 엄격하게 이루어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27년 12월부터 1928년 8월 사이의 『연문소년소녀독물의 내용과 분류』 처분 기록을 보면, 잡지와 단행본 88편 가운데 5편이 ‘단결의 미덕을 선전하거나 이를 촉구했다’는 이유로, 또 22편이 ‘소년소녀의 각성과 노력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문제시되었다. 어른 세대보다 민족적 자의식이 약하다고 평가된 이 세대는 상대적으로 통제하기 쉬운 집단으로 간주되었고, 그 결과 식민지 조선의 아동들은 사상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감정을 관리받는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치안 통제가 사상 검열을 넘어, 집단적 정서가 형성될 가능성 자체를 미리 차단하려 한 기획이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총동원 체제하에서 풍속 검열은 전쟁 수행에 불필요한 일상적 욕망과 애착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갔다. 노동은 생계의 의미를 넘어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정의되었고, 문학과 대중매체 역시 현 상황을 비판하거나 미래의 변화를 기대하는 정조를 허용하지 않았다. 1938년 『조선일보』의 ‘유행가 현상 모집’이 “건실하고 청신하며 명랑한 가사”<sup>43)</sup>를 요구한 사례는 대중 정서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였으며, 1937년 총독부 사회교육과가 ‘농촌 명랑화’를 명목으로 오락물을 조사한 조치 역시 장기전 수행을 위한 노동 생산성 제고라는 목표를 노골화한 것이었다.<sup>44)</sup> 이러한 조치들은 풍속 규제가 실질적으로 치안 질서 유지와 전시 동원 정책과 분리될 수 없었음을 입증한다.

이 시기 생산된 노래들은 감정 통제의 방식 또한 명확히 보여준다. 1942년 발표된 <총후(銃後)의 자장가><sup>45)</sup>는 아버지의 참전을 기리는 서사를 통해 유아의 정서를 ‘국가적 체제’에 예속시키며 총동원 체제 아래 희생 정신의 대물림을 건전한 ‘풍속’으로 보았다. 반면 1938년 발매된 <똥단지 서울><sup>46)</sup>은 소비 문화와 도시 유희를 풍자하는 가사를 비생산적이고 부도덕한 ‘풍속’으로 분류해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됐다. 외설성이 없음에도 특정 감정 구도를 촉발할 가능성이 문제시된 것이다. 결국 통치 체제에 대한 은유적 불만 역시 단속 대상이 되었고, 집단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모두 풍속과 치안의 이중 규제 아래 놓였다.

검열은 금지와 허용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무엇이 합법의 경계 안에 있는가를 학습하게 하는 장치였다. 특정한 표현 형식이나 서사 방향이 계속해서 승인되거나 배제되는 상황 속에서, 식민지 조선인은 점차 스스로 발화의 폭과 방향을 조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체화된 감각

42) 박현호, 앞의 글, 231쪽.

43) 소래섭,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 웅진지식하우스, 2011, 92쪽.

44) 같은 책, 107쪽.

45) 말 잘 듣는 아가야 우리 애긴 잘도 자 / 우리 아가 꿈속에서 아빠를 만나 / 총알 맞은 전투모를 씌워달라고 / 앙금앙금 그 꿈속에 졸라보려마 / 우리 애긴 옥동자 우리 애긴 잘도 자 / 기다리는 아버지가 돌아오실 땐 / 손을 들어 반가이 불러보자며 / 우리 애기 병정 애기 잘도자누나 (조명암 작사, 김해송 작곡, 박향림 노래, Okeh 31097, 1942. 3.)

46) 모던 걸 아가씨들 둥근 종아리 / 데파트 출입에 굶어만 가고 / 저 모던 보이들의 굶은 팔뚝은 / 네운의 밤거리에 야위어 가네 / 똥단지 서울 꼴불견 많다 / 똥단지 서울 똥단지 서울 // 만나면 헬로 소리 러브파레드 / 뒷골목 행랑에 파티를 열고 / 하룻밤 로맨스에 멀미가 나서 / 고스톱 네거리에 굿바이 하네 / 똥단지 서울 꼴불견 많다 / 똥단지 서울 똥단지 서울 // 집에선 비지밥에 꼬리 치면서 / 나가선 양식에 게트림 하고 / 티룸과 카페로만 순회를 하며 / 금붕어 새끼처럼 물만 마시네 / 똥단지 서울 꼴불견 많다 / 똥단지 서울 똥단지 서울 (한국고음반연구회, 『유성기 음반 가사집 4』, 민속원, 2009, 1026쪽.)

은 단순히 법적 규제를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 사고의 틀과 언어의 형태 자체에까지 흔적을 남겼다. 치안과 풍속의 구분은 제도적으로만 존재했을 뿐, 실제 운용에서는 전시 동원을 용이하게 만드는 통제 논리에 의해 하나로 엮여 있었다. ‘허용된 감정’과 ‘허용된 결집’을 제어하는 동일한 목적 아래에서 두 범주는 함께 작동했다. 식민지기 소설에 가해진 이른바 풍속 검열은 외설이나 도덕의 문제에 한정되기보다, 집단적 감정의 흐름과 잠재적 결집 가능성을 관리하려는 치안 장치와 맞물려 있었다. 치안과 풍속은 제도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용의 층위에서는 상당 부분 허구적인 경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동인, 「감자」, 『조선문단』 제4호, 1925. 1.  
현진건, 「정조와 약가」, 『신소설』 제1권 제1호, 1929. 12.  
김유정, 「소낙비」, 『조선일보』, 1935. 1. 29.  
\_\_\_\_\_, 「가을」, 『사해공론』 제2권 제1호, 1936. 1.  
\_\_\_\_\_,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 전집』, 강, 2007.  
이태준, 「복덕방」, 『월간조광』 제3권 제3호, 1937. 3. 1.

### 2. 단행본

- 한국고음반연구회 편, 『유성기 음반 가사집 4』, 민속원, 2009.  
검열연구회 편,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소명출판, 2011.  
소래섭,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 웅진지식하우스, 2011.  
한만수, 『허용된 불온-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학』, 소명출판, 2015.  
정근식, 한기형, 이해령, 고노 켄스케, 고영란 편, 『검열의 제국』, 푸른역사, 2016  
문한별, 『검열, 실종된 작품과 문학사의 복원』,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17.  
임유경, 『불온의 시대-1960년대 한국의 문학과 정치』, 소명출판, 2017.  
한기형 편, 『미친 자의 칼 아래서-식민지 검열 관련 신문기사 자료 1』, 소명출판, 2017.  
\_\_\_\_\_, 『미친 자의 칼 아래서-식민지 검열 관련 신문기사 자료 2』, 소명출판, 2017.  
\_\_\_\_\_, 『식민지 문역-검열, 이중출판시장, 피식민자의 문장』,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이민주, 『제국과 검열』, 소명출판, 2020,  
김영애·강영미·강진호·김소영·김준현·문한별·유임하·장영미·홍창수, 『개작과 검열의 사회·문화사  
(1)』, 박문사, 2022.  
린 헌트 편, 조한욱 역, 『포르노그래피의 발명-외설성과 현대성의 기원, 1500~1800』, 책세  
상, 1996, 16~18쪽.

### 3. 논문

- 정근식, 「일제하 검열기구와 검열관의 변동」, 『대동문화연구』 제51호, 2005.  
채석진, 「제국의 감각: '에로 그로 년센스」, 『페미니즘 연구』 제5호, 2005.  
권명아, 「풍속 통제와 일상에 대한 국가 관리-풍속 통제와 검열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족문  
학사연구』 제33호, 2007.  
\_\_\_\_\_, 「식민지검열과 '검열표준'-일본 및 대만과의 비교를 통하여」, 『대동문화연구』 제79  
집, 2012.  
이승희, 「식민지 조선 흥행시장의 병리학과 검열체제」, 『상허학보』 제35집, 2012.  
\_\_\_\_\_, 「식민지 섹슈얼리티와 검열-'도색(桃色)'과 '적색', 두 가지 레드 문화의 식민지적 정  
체성」, 『동방학지』 제164집, 2013.  
문한별, 『『조선출판경찰월보』를 통해서 고찰한 일제강점기 단행본 소설 출판 검열의 양상』,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8집, 2013.  
\_\_\_\_\_, 「일제강점기 도서관의 소설 검열과 작가들의 대응 방식-출판 검열 체계화기  
(1926-1938) 검열 자료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79호, 2020.

- 한기형, 「이중출판시장과 식민지 검열: 토착성이란 문제의식의 제기」, 『민족문학사연구』 제57호, 2015.
- 임유경, 「개념으로서의 ‘불온’」, 『개념과 소통』 제15호, 2015.
- 김정화·문한별, 「김유정 소설 <소낙비>의 검열과 복원」, 『국어국문학』 제193호, 2020.
- 박도화,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법을 통한 권력 행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 박정애, 「식민지 조선 사회의 성 구매 변화와 식민권력의 대응」, 『여성과 역사』, 제36호, 2022.
- 박수정, 「『조선총독부 금지단행본목록』과 일본 내무성 『금지단행본목록』의 비교 고찰-‘풍속괴란(風俗壞亂)’으로 보는 성과학(性科學)의 유입」, 『동북아문화연구』 제72집, 2022.